83. 보일러 기사에서 발생한 저산소성뇌증(의증)

성별 남 나이 57세 직종 보일러 기사 업무관련성 높음

1. 개요: 한○○는 2005년 8월 H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입사하여 주로 난방용
보일러 및 열병합발전기 운전업무를 해 오다가 2006년 1월 30일 오전 8시경 실
신한 상태로 발견되어 S병원에서 지연성 저산소성 뇌증(의증)으로 진단받았다.

- 2. 작업내용 및 환경: 한〇〇는 보일러 기사로 주로 난방용 보일러 및 열병합발전기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아파트 거주자들의 시설(난방용 배관) 점검 및 아파트 조경시설 관리(수목 전지작업 및 잔디관리 등) 업무를 병행하였다. 근무시간은 격일제 근무(24시간 맞교대)로 오전 8시경 다른 근무자와 교대를 하였다. 사고당일 열병합발전기의 배기 덕트 중 전기실에서 덕트 연결부위 하부의 고무패킹이 탈락되어 배관하부로 늘어져 있었고 이부위로 배기가스가 전기실로 누출되고 있었으며 전기실의 외부배기용 환풍기는 가동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. 2006년 5월 17일 열병합발전기의 옥외 배기구에서 가스농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일산화탄소가 103.2 ppm였다.
- 3. 의학적 소견: H병원에서 실시한 정기 검진(2003년, 2004년)은 정상이었으며, 2005년 채용검진에서도 정상소견을 보였다. 2006년 1월 31일 아침 9시경 발견시 입에 거품이 있는 침을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있었고 팔 다리는 강직으로 구부리고 있었다고 한다. C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조치 후 S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하였는데 당일 저녁10시에 깨어나 정상으로 회복되어 다음날 퇴원하였으나 인지, 지각 능력의 장애를 보여 2006년 2월 27일 다시 S병원에 입원하였다. 입원 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현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안하며, 혼자서 걸질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. 이에 S병원 주치의는 '일산화탄소 중독 등 유해가스에 의한 지연성 저산소성 뇌증이 매우 의심된다'고 하였다.
- 4. 결론: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한OO는
 - ① 현재 지연성 저산소성 뇌기능 저하증(의증)으로 진단되었으며.
 - ② 사건 당시 배기덕트에서 누출사고가 있었고,
 - ③ 배기덕트에서의 일산화탄소 농도측정을 통해 추정해볼 때 사건 당시 작업장내에서 노동부 노출기준을 수 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,
 - ④ 일산화탄소에 의한 지연성 저산소성 뇌기능 저하증과 임상경과가 일치하며, 그 외 다른 원인에 의한 영향도 없으므로

근로자 한OO의 지연성 저산소성 뇌기능 저하증 의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